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방재상담

☞ :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 소화용수설비는 주로 대형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화재발생시 소방펌프자동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설비의 설치대상은 대지면적이 2만㎡ 이상인 것으로 건축물의 1, 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이면 설치대상이 됩니다.

물을 저장하는 소화수조의 용량은 최소한 20㎥ 이상의 것으로 소방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1. 소화수조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가 2m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구경 65mm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2.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수조에는 흡수관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한 변이 0.6m이상이거나 직경이 0.6m이상으로 하고 용량이 80㎥미만인 것에는 1개이상, 80㎥이상인 것에는 2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전용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화재시 건물내의 인원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단이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 계단실은 출구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나. 계단실의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단실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출입구는 제외)가 있을 경우 망입유리의 불박이 창으로 그 면적이 1㎡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및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마. 피난계단의 폭은 학교,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140cm, 기타의 건물에 있어서는 120cm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계단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 계단의 유효폭은 90cm이상으로 하고 기타 시설기준은 옥내계단과 동일합니다.

3. 단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라도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피난계단설치가 배제됩니다.

보험상담

☞ : 휴업중인 공장에 대한 보험요율의 할인조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보된 리스물건이 부도등으로 인해 가동중지된 경우 보험기간중 이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보험약관) 및 환급보험료의 계산방법은?

2. 상기 리스물건의 가동중지를 통보하는 절차는? (구두 혹은 문서 및 증명서류 필요여부)

3. 상기 사항에 의거 할인된 보험료를 환급받은 후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조사결과 정상가동중 화재가 발생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은?

☞ : 질의 1항 및 2항에 대하여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건물을 휴업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화재보험 요율서상 공장물건이 2개월이상 휴업할 경우 공장물건 기본요율의 1/2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휴업기간의 보험기간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급합니다.

휴업개시일 이후 휴업통지를 하고 휴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환급받고자 할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휴업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산식은

$$\text{보험금액} \times \text{기본요율} \times \frac{1}{2} \times \frac{\text{휴업기간}}{\text{보험기간}} \text{입니다.}$$

2. 질의 3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휴업을 종료하고 정상가동할 경우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자 : 한국개발리스·응답자 : 기획조정실〉

☞ : 당 아파트는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세대는 개별적으로, 이전하지 않은 세대는 주택공사에서 일괄로 귀 협회에서 취급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부속건물로 주인의 공동재산이며 주택관리에 필요한 보일러 및 변전실등이 시설돼 있는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받을 경우 보상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자 합니다.

☞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 및 변전실, 보일러실등은 부속건물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속건물로서 이의 보험가입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가. 부속건물이 입주자의 공유지분에 포함, 등기되었을 경우 세대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속건물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며, 이때의 보상방법은 보험사고발생일 현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총 면적에 대한 가입면적의 비율에 따라 실손해액을 산출하여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3조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나. 부속건물이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별도의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라면 소유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자 : 잠실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응답자 : 기획조정실〉

설마설마 방심말고

조심조심 불조심